

의안번호	2201038
의 퇴 인	이훈기의원
회 답 일	2024. 08. 16.
추계번호	24D12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보험 등을 가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4억 6,900만원, 2030년 45억 7,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5억 4,200만원(연평균 35억 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국가·지자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험 가입 (안 제76조의5제2항제3호)	2,469	2,976	3,503	4,015	4,579	17,542	3,508

주: 1. 국가·지자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험 가입(안 제76조의5제2항제3호)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결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 6. 29.)의 충전시설 확충 계획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6조의5제2항제3호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6조의5제2항제3호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에 필요한 비용
 - 개정안은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등으로 추가재정소요 예상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7)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6%	2.2%	2.2%	2.1%	2.1%	2.1%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등으로 추가재정 소요가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에 1기당 보험료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보험 가입 대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 국가 등이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실적 및 계획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2026년 72만기, 2030년 123만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한 총량 추정치에 운영주체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에 근거한 운영주체별 비중을 곱하여 추산함
 - 2022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환경부 제출자료)과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 6. 29.)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5년 59만기, 2027년 85만기, 2030년 123만기가 보급될 계획
 - 본 추계에서는 제시된 계획 규모를 바탕으로 2023~2024년, 2026년, 2028~2029년은 선형보간법을 활용하여 추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비중은 3.2%(환경부 제출자료)²⁾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정: 2022~2029년

(단위: 만기)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적	추정	추정	계획	추정	계획	추정	추정	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a)	21	33	46	59	72	85	98	110	1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a×3.2%)					2.3	2.7	3.1	3.5	3.9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와 관계부처 합동자료(2023. 6. 2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누적 기준 전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263,388기이고 이 가운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8,309기로 3.2%

- (1기당 보험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기당 보험료는 연간 1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
 - 대인 1.5억/인당(연간한도 100억원), 대물 10억원/사고당 기준으로 산정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기당 연간 약 10만원(2023년 기준)의 보험료가 발생 가능(손해보험협회 자료³⁾)

[표 3] 1기당 보험료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1기당 보험료	107,164	109,415	111,712	114,058	116,3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보험 등을 가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4억 6,900만원, 2030년 45억 7,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75억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국가·지자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험 가입 대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a, 기)	23,040	27,200	31,360	35,200	39,360	-
1기당 보험료(b, 원)	107,164	109,415	111,712	114,058	116,339	-
추가재정소요(=a×b, 백만원)	2,469	2,976	3,503	4,015	4,579	17,5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시설 형태별 차등 위험도에 따른 추가할인을 계산 등을 위한 충전소 상세현황 자료가 부족하고 향후 증설 시 형태별 개수 추정 한계 등으로 평균단가를 제시하였으며, 다만, 의무보험이 도입되어 손해보험 가입이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 충전시설 1기당 보험료가 연간 10만원 이하로 인하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 6. 29.)의 충전시설 확충 계획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